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6. 10.(목) 10:00

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 
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95호
- 나. 제 출 자 : 김경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5. 28.

## 2. 제안이유
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금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우선구매 대상 기관(안 제4조)
- 다.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(안 제5조)
- 라. 구매 촉진, 비용 지원, 관내 유관기관 등에 구매 협조 요청(안 제6조~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 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3조, 제7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5. 28. ~ 6. 2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생산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2) 우선구매 대상 기관(안 제4조)
  - 우선구매 공공기관을 금천구 행정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함.
- 3)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(안 제5조)
  - 우선구매 품목, 목표율 등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의 근거를 규정함.
- 4) 구매 촉진 및 지원, 관내 기관 등에 구매 협조 요청(안 제6조~제7조)
  - 구매 촉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, 관련 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규정함.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,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·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

[시행 2020. 5. 27.] [법률 제16601호, 2019. 11. 26., 일부개정]

**제2조(정의)** ②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(이하 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”이라 한다)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1. 8. 4., 2014. 5. 20., 2016. 5. 29.>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
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

**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공공기관의 구매촉진)**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>

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13.>

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4. 5. 20., 2018. 3. 13.>

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 <개정 2011. 8. 4., 2014. 5. 20., 2018. 3. 13.>

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8. 3. 13.>